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박찬원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기획감사실장)	일 자	질의	2018년 11월 29일
			답변	2018년 12월 3일
회 의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부서별 복사기(복합기) 사용현황 및 계약서 사본(2018년)

답변내용

- 부서별 복사기(복합기) 사용현황 및 계약서 사본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복사기(복합기) 사용현황 및 계약서 사본 1부. 끝.

복사기(복합기) 임대현황

(단위: 원)

연번	부서명	계약자	최초계약일	계약 내용				총 지급액 ('18. 1월 ~ 10월)	월 평균 사용료	비 고
				계약기간	기본사용료(월)	기본사용량	추가사용료			
1	기획감사실	OA렌드	2010. 2. 1.	2015. 1. 2. ~ 2018. 12. 31	1,100,000	* 흑백 10,000매 * 컬러 7,000매	* 흑백 22원/매 * 컬러 143원/매	13,200,000	1,100,000	연납
2	기획감사실 (서울사무소)	중앙사무기	2015. 6. 1	2015. 6. 1 ~ 2018. 12. 31	220,000	* 흑백 3,000매 * 컬러 1,000매	* 흑백 30원/매 * 컬러 150원/매	2,400,000	200,000	연납
3	올림픽기념 사업단	신도리코	2018.08.01.	2018.08.01. ~ 2021.07.31.	275,000	무제한	없음	825,000	275,000	임대료1번지선납 추가비용 (187.30기준)
4	문화관광과 (본청 사무실)	OA렌드	2015. 1. 1.	2015. 1. 2. ~ 2018. 12. 31.	385,000	* 흑백 5,000매 * 컬러 1,200매	* 흑백 22원/매 * 컬러 121원/매	6,675,900 (187.30기준)	667,590	반기말 지급 (반기말 미지급)
5	문화관광과 (대화도서관 1층)	OA렌드	2016. 1. 1.	2018. 1. 1. ~ 2018. 12. 31.	176,000	* 흑백 3,000매 * 컬러 300매	* 흑백 20원/매 * 컬러 110원/매	1,056,000 (18.6.30기준)	176,000	반기말 지급 (반기말 미지급)
6	문화관광과 (대화도서관 2층)	OA렌드	2017. 4. 4.	2018. 1. 1. ~ 2018. 12. 31.	176,000	* 흑백 3,000매 * 컬러 300매	* 흑백 20원/매 * 컬러 110원/매	1,056,000 (18.6.30기준)	176,000	연말지출
7	문화관광과 (진부도서관)	헤피봉	2017. 1. 1.	2018. 1. 1. ~ 2018. 12. 31.	150,000	* 흑백 3,000매 * 컬러 1,000매	* 흑백 10원/매 * 컬러 100원/매	0	150,000	연말지출
8	문화관광과 (대관령도서관)	OA렌드	2018. 9. 1	2018. 9. 1. ~ 2018. 12. 31.	187,000	* 흑백 3,000매 * 컬러 300매	* 흑백 20원/매 * 컬러 110원/매	0	187,000	연말지출
9	주민복지과	OA렌드	2016. 11. 1.	2016. 11. 1. ~ 2019. 10. 31	350,000	* 흑백 5,000매 * 컬러 1,200매	* 흑백 20원/매 * 컬러 100원/매	4,409,000	440,900	
10	종합민원과(민원행정)	스카이시스템	2013. 11. 25.	2018. 1. 1. ~ 2018. 12. 31	393,000	* 흑백 3,000매 * 컬러 1,000매	* 흑백 22원/매 * 컬러 120원/매	3,537,000	294,750	
11	종합민원과(엘프민원실)	OA렌드	2018. 9. 1.	2018. 9. 1. ~ 2019. 9. 1	100,000	* 흑백 5,000매	* 흑백 20원	220,000	110,000	
12	종합민원과(토지관리)	OA렌드	2017. 12. 28.	2018. 1. 1. ~ 2019. 12. 31	715,000	* 흑백 10,000매 * 컬러 7,000매	* 흑백 20원 * 컬러 110원	7,700,000	770,000	
13	종합민원과(지적)	OA렌드	2010. 7. 1.	2018. 1. 1. ~ 2018. 12. 31	1,150,000	* 흑백 0매 * 컬러 10,000매	* 흑백 0원 * 컬러 110원	10,350,000	1,150,000	
14	종합민원과(지적)	스카이시스템	2011. 5. 1.	2018. 1. 1. ~ 2018. 12. 31	330,000	* 흑백 10,000매 * 컬러 1,000매	* 흑백 22원 * 컬러 120원	2,970,000	330,000	

(단위:원)

연번	부서명	계약자	최초계약일	계약 내용				총 지급액 ('18. 1월 ~ 10월)	월 평균 사용료	비고
				계약기간	기본사용료(월)	기본사용량	추가사용료			
15	허가과	없음								
16	지치행정과	OA렌드	2015. 1. 2.	2015. 1. 2. ~ 2018. 12. 31	715,000	* 흥백 5,000매 * 컬러 5,0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65원/매	4,290,000	715,000	반기말 지급 (하반기 미지급)
17	재무과	스카이스시스템	2013. 9. 16.	2016. 9. 16. ~ 2019. 9. 15	393,000	* 흥백 3,000매 * 컬러 1,0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50원/매	4,716,000	393,000	12개월치 선납 (2018.4.10)
18	일자리경제과	스카이스시스템	2017. 3. 1.	2017. 3. 1. ~ 2021. 3. 1.	536,800	* 흥백 3,000매 * 컬러 1,0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20원/매	4,831,200	536,800	반기말지급 3분기까지지급 완료
19	교육체육과	없음								11월계약예정
20	환경위생과	OA렌드	2013.5.1.	2017. 5. 1. ~ 2021. 4. 30.	380,000	* 흥백 6,000매 * 컬러 1,500매	* 흥백 20원/매 * 컬러 120원/매	5,016,000	833,333	추가사용요금 약500만원
21	신뢰과	OA렌드	2016. 12. 1.	2016. 12. 1. ~ 2020. 11. 30	418,000	* 흥백 6,000매 * 컬러 1,5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10원/매	8,415,000	935,000	
22	안전건설과	스카이 시스템	2016.04.18	2016.04.18~2019.04.18	390,000	* 흥백 6,000매 * 컬러 2,0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20원/매	0	390,000	연말지출
23	도시주택과	OA렌드	2016. 9. 7.	2016. 9. 7. ~ 2020. 9. 6	380,000	* 흥백 6,000매 * 컬러 1,500매	* 흥백 20원/매 * 컬러 110원/매	8,982,600	898,260	
24	도시주택과 교통계	OA렌드	2017. 3. 2.	2017. 3. 2. ~ 2021. 3. 2.	110,000	없음	소모품구입사용조건	1,265,000	110,000	
25	시설관리과	OA렌드	2018. 5. 1.	2018. 5. 1. ~ 2021. 4. 30	380,000	* 흥백 6,000매 * 컬러 1,500매	* 흥백 20원/매 * 컬러 110원/매	2,280,000	380,000	
26	보건사업과	스카이스시스템	2017. 9. 29.	2018. 1. 1. ~ 2018. 12. 31.	393,000	* 흥백 6,000매 * 컬러 2,0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20원/매	3,930,000	393,000	
27	진료지원과	스카이스시스템	2018.1.1.	2018. 1. 1. ~ 2021. 12. 31.	393,000	* 흥백 6,000매 * 컬러 2,0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20원/매	3,930,000	393,000	
28	농축산과	OA렌드	2015.10.22.	2015.10.22~2019.10.21.	380,000	* 흥백 5,000매 * 컬러 1,200매	* 흥백 20원/매 * 컬러 130원/매	5,016,000	380,000	
29	유통원예과	없음								
30	기술지원과	OA렌드	2017. 6. 1.	2017. 6. 1. ~ 2020. 6. 1.	418,000	* 흥백 6,000매 * 컬러 1,500매	* 흥백 22원/매 * 컬러 121원/매	7,782,170	778,217	

(단위:원)

연번	부서명	계약자	최초계약일	계약 내용				총지금액 ('18. 1월 ~ 10월)	월 평균 사용료	비고
				계약기간	기본사용료(월)	기본사용량	추가사용료			
31	삼하수도사업소	OA렌드	2018.10.2.	2018.10.2.~2022.10.2.	380,000	* 총백 6,000매 * 컬러 1,500매	* 흑백 20원/매 * 컬러 110원/매	6406,400	640,640	
32	의회사무과	OA렌드	2011. 4. 1.	2017. 9. 1. ~ 2021. 8. 31.	400,000	* 흑백 6,000매 * 컬러 2,000매	* 흑백 1매당 20원 * 컬러 1매당 110원	4,400,000	440,000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A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평창군청기획감사관(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8년 11월 02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23-009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68	강원 평창 평창 향교길 68
상호	평창군청 기획감사관	OA랜드
대표자	이명숙	이명숙
주민등록번호		

—記—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임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재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SERIAL NO. SORTER APIC 11820	개시일 2018.01.02 개시메타	소재지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68 사업장명 기획감사관 부과명
XEROX SERIAL NO. SORTER	개시일 개시메타	소재지 사업장명 부과명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_____

임차료: 기본요금: ₩1,000,000 /월 (복합 ₩10,000매/칼라 ₩11,000매)

추가요금: 복합(₩10,000 매부터) 정액 ₩3,000 원/칼라 (₩1,000 매부터) 정액 ₩1,200 원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료율은 연체 1일당 연체 최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비율을 적용한다.
- (3) 외환법에 의한 요율지급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액 현찰 매입환율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디그래 정신안 매입환율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영문 영보통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할 테스트복사 및 체장회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대표" 방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인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우편 영보통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받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받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견 적 서


No.

2018년 01월 일

평창군서울사무소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합계금액 : 金이백사십만원정 (₩2,400,000)

공 급 자	등록번호	106-06-78375		
	상 호 (법인명)	중앙사무기	성명	김정규 
	사업장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15길 22		
	전화번호	TEL: 701-9514 FAX: 701-9515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복합기(스캔,복사기, 프린터)임대료	D410	12개월	₩220,000	₩2,640,000	포함
연납할인		12개월	-₩20,000	-₩240,000	
합 계				₩2,400,000	포함

비 고

취급자: 김 정 규 (인)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청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신도리코평창센터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구 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226-10-17441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길48
상 호	평창군청	신도리코평창센터
대 표 자	군수	박정철
전 화 번 호	033-330-3300	033-335-2345

제 1 조 (RENTAL SERVICE 계약의 정의)

RENTAL SERVICE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대상기계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복사용지제외)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RENTAL SERVICE 요금을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기종 및 요금)

1. RENTAL SERVICE 요금은 다음과 같다.

(VAT포함)

기 종	기 번 OPTION	보 증 금	가 격 조 건			설 치 장 소
			기본매수	기본요금	추가요금	
D420		무	무제한	275,000	무	올림픽기념사업단

2. RENTAL SERVICE를 위한 일체의 작업 실시는 "을"의 소정 영업시간 내에 한하기로 한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한 기간외의 작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해 소정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조 (설치장소)

1. 기계의 설치장소는 제2조에 기재된 곳에 한정된다.
2. "갑"이 기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설치에 따른 내역을 문서로써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는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을"은 기계의 이전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 년 08 월 01 일로부터 2021 년 07 월 31 일까지(기본 3 년)로 한다.
2. "갑" 과 "을" 어느 쪽에서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약통보가 없을 시는 본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1. "을" 은 매월 요금계산의 마감일 기준으로 미터 확인표에 Counter 수치를 기록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사용 복사 매수율 산출하여 이에 따라 RENTAL SERVICE 요금을 계산한다.
2. 계약 개시의 월은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경우에 RENTAL SERVICE 요금은 제2조 1항의 월 기본료 규정에 구애 없이 사용 복사 매수에 대한 추가단가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계약 해지의 월은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RENTAL SERVICE 요금은 제2조 1항의 월 기본료 규정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0A랜드 대리점(이하 "출"이라 한다)와 평창군 평창읍 수정리 11(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4년 10월 28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93-008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수정리 11	강원 평창 평창 향교길 68
상호	평창군 평창읍 수정리 11	0A랜드
대표자	김재덕 (대표이사)	이명수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입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AP103325</u> SERIAL NO. <u>120191</u> SORTER	개시일 <u>2014.10.01</u> 개시메타 <u>30211 / 199340</u>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수정리 11</u> 사업장명 부과명 <u>평창군수정리사무소</u>
XEROX _____ SERIAL NO. _____ SORTER	개시일 _____ 개시메타 _____	소재지 _____ 사업장명 _____ 부과명 _____

제 3 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한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_____

임차료: 기본요금: _____ /월 (블랙 _____ /매 /칼라 _____ /매)

추가요금: _____ /매부터 _____ 원 /칼라 _____ /매부터 _____ 원

제 5 조 (임차료의 지급)

-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별도의 회고 없이 연계 합정회화 청구할 수 있으며 연계 합정회화는 연체 1일당 연체 최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외국환에 의한 보충지급에 있어, 외환은행 환산율 지급입자율 기준으로 하여, 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현찰 매입율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 모든 지불은 "을"이 검토 완료하지 않는 한 "출"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임차료 계산은 복사대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을"의 보수점검을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한 제곱지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나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탈을 확인하여 불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영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대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복사로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대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받은 복사대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받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연장금)

-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연장금에 대한 미지급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대화드시판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6월 27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7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97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
상호	평창구청	O A 랜드
대표자	상재규 (박영민)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DPC 2260</u> SERIAL NO. <u>2062020</u> SORTER <u>910828</u>	개시일 <u>2017.07.01</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대화면</u> 사업장명 <u>대화드시판 / 평 DPC2260</u> 부과명 <u>대화드시판 3종 A3U2020</u>

제 3 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1 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100,000 원</u>
임차료: 기본요금:	<u>176,000 원 X 2 대</u> (176,000 원 X 2 대/월) <u>352,000 원</u>
추가요금:	<u>용액 20 원 X 2 대</u> (용액 20 원 X 2 대/월) <u>40 원</u>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W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현찰 매입률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한다.
-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복사로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유지보수계약서

진부도서관 이하"갑"이라함)와 해피컴퓨터(이하"을"이라함)간의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유지보수 서비스

가. 유지보수 서비스란 "을"소유의 기계를 "갑"에게 임대(렌탈)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을"의 책임하에 유지보수 서비스와 소모품(용지제외)을 "갑"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사용과실,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급의 경우는 무상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갑"은 "을"이 실행하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 소정의 유지보수 요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대상기계 및 장소

기종	기번	요금계산개시일	최소매수	설치장소
ir-c3325		설치(계약)일로부터		진부도서관

3. 설치장소

가. 설치장소는 위 사항의 기재된 곳에 한정한다.

나. "갑"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전 설치는 "을"이 행한다.

다. "을"은 이동설치에 따른 정비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청구금액을 지급기로 한다.

4. 유지보수 서비스 요금

기본요금		추가단가(VAT별도)		비고
기본매수(월)	유지보수금액(VAT별도)	흑백	칼라	
흑백	칼라			
3,000	1,000	150,000원	10원	100원

5. 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나. "갑"과 "을"은 어느쪽에서든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내 해지시 설치수거비용항목으로 2달요금이 위약금으로 나온다.

6. 요금의 계산 및 지불

가. 매월 해당 매수를 확인하여 요금을 계산하며, 미달되는 경우에도 요금은 월 책정금액으로 한다.

나. "갑"의 인위적인 훼손이나 사용 과실에 따른 수리비용은 "을"이 청구하며, "갑"은 지급기로 한다.

7. 관리 의무

가. 유지보수 서비스 대상 기계 및 관련 소모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나. "갑"은 대상 기계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기계 원형의 변경 및 매각, 양도, 대여, 유용 등 "을"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계약 해지

가.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을 신의, 성실히 이행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1월 1일

(갑) 주 소 : 평창군청(진부도서관)
 사업자등록번호 : 224-08-00903
 상 호 : 평창군청(진부도서관)
 대 표 자 : 심재국 (인)

(을) 주 소 224-08-49380
 사업자등록번호 : 해피컴퓨터 노성진
 상 호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종로163
 대 표 자 : (인) 컴퓨터
 이 스 핸드폰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대진인도시스템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8년 09월 20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703	225-02-76568
주소	평창읍 진장리 97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
상호	평창상장	O A 랜드
대표자	김민기 (대표이사)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서메타	설치장소
XEROX <u>date 226t</u> SERIAL NO. <u>480990</u> SORTER	개시일 <u>2018.09.01</u> 개서메타	소재지 <u>평창 대진인도시스템</u> 사업장명 부과명 <u>대진인도시스템</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4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1</u>	
임차료: 기본요금: <u>22,100,000 4</u>	1월 <u>22,100,000</u> 매/월 <u>300매</u>
추가요금: <u>20원</u> <u>300매</u> <u>110%</u>	1월 <u>20원</u> <u>300매</u> 매부터 <u>300매</u>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현찰 매입률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20 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렌트 대리점(이하 "출"이라 한다)와 수인생활지원회(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6년 11월 1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2-00907	225-02-76568
주 소	평창읍 순정리 771	평창군 평창읍 중앙교길68
상 호	평창지원회 (주인사인)	O A 렌트
대 표 자	김재국 (대표이사)	합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범위)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 장소
XEROX SERIAL NO. <u>AP111125</u> SORTER <u>890027</u>	개시일 <u>2016.11.1</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순정리 771</u> 사업장명 <u>수인생활지원회</u> 부과명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4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10,000,000</u>			
임차료: 기본요금:	<u>22,350,000</u>			
추가요금:	<u>200,000</u>			
* 기본 요금은 장비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별도의 회고 없이 연체 합동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합동료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이율율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은행 환산율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에 의한 지불을 할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고액 환산 금액을 적용하고,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액 전신환 매입환율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영수증보통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용 사용자 테스트복사 및 본 계약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인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형태로 정기로 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일일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여 최종 월간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청(중합민원과(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ystem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번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케논 C5235			평창군청 중합민원과 (인원행정)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들도록 인도(납품)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인체의 부합물과 정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매매, 대여,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멸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제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토너 카트리지는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편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침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정기 교환부품.
3. 기술 용역.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시 Cleaning,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가액,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매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매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계약기종				요금 제도(A4 용지 요금 기준(VAT 포함, 단위 : 원, 매))					최초 카운터
NO	기종	임대료(월)	보증금	구분	정당 요금	통합매수			
						기본매수	기본요금	추가요금	
1	케논 C5235	393,000(부가세포함)		칼라	120	1,000			0
				흑백	22	3,000			0
2				칼라					
				흑백					
3				칼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01)일로부터 매 (말)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직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를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써 해당월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월의 Rental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본 요금제에 의하여 Rental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개시 월 또는 해지 원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은 제 7조의 월 기본 요금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금액을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으로 하며, 기본 매수의 산정도 월 기본 매수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원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매수를 기본 매수로 한다.
제 9조 (Re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① 보증금은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기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은 "을"이 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산출 후 해당 원의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이 Rental Service 이용 대금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제16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금의 관리 및 처분) ① "을"은 전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동조 ①항 전단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은 그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시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은 보증금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을"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복사기 가액.

2. 전 제 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원 사용 요금 중 계약종료일 현재 "갑"이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금액.

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중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금액.

⑤ 전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을"이 보관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선권의무) ① 전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을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을"에게 반환 시까지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이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이 재감하거나 유통하는 소모품, 소모성부품을 "을"으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외에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갑" 및 "을"은 상호, 연락처 등의 변경 및 본 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시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내 담으로써 "을"이 기존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용도(목적)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업무용에서 복사영업용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최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동설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이를 실시한다.

④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변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며, 계약변경의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변경에 관한 합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비용의 청구) ①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소모품 및 부품 등의 비용과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변경을 요청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 중 본 계약 각 조항에서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을"이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6조의 Rental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당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제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당사 거래 정지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회의를/파산/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채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5조 (기계 등의 반환) ① 본 계약이 기간단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은 복사기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사기 등의 회수를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 시간 내에 기계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갑"의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항에 관한 배상문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가(소비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 년 01월 0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12개월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써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②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①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18 년 01월 일

위 "갑" (사 업 장 소 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인77
 (상 호) 평창군청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7
 (성 명) 신재국



위 "을" (사 업 장 소 계) 강원도 평창군읍 하리 154
 (상 호) 스키이시스템
 (사업자등록번호) 225-02-68277
 (성 명) 이진욱



복사기임대차계약서

선로인원사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종합 민원과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8 년 9 월 1 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803	225-02-76568
주소	평창읍 관천길 117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
상호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O A 랜드
대표자	한광기 (장서장)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DC IV 2060</u>	개시일 <u>2018. 9. 1</u>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관천길</u>
SERIAL NO. <u>966667</u>	개시메타 <u>11.11.10</u>	사업장명
SORTER		부과명 <u>종합 민원과</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임차료: 기본요금:	<u>₩ 100,000</u> /월	(부가가치세 별도)
후가요금:	<u>₩ 50</u> /일	(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W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이율율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율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현찰 매입율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건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차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25 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청(중합민원과) (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ystem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번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CP405d			평창군청 중합민원과 (지적)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들으로써 인도(납품)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일체의 부합물과 정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매매, 대여,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멸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제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토너 카트리지는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현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침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정기 교환부품.
3. 기술 용역.
 -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사. Cleaning, 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가액,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매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매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계약 기종				요금 제도(A4 용지 요금 기준/VAT 포함, 단위 : 원 매)					최초 카운터
NO	기종	임대료(월)	보증금	구분	장당 요금	통합매수			
						기본매	기본요금	추가요금	
1	CP405d	330,000(부가세포함)		칼라	120	1,000			0
				흑백	22	10,000			0
2				칼라					
				흑백					
3				칼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01)일로부터 매 (말)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직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를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써 해당월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월의 Rental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본 요금제에 의하여 Rental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개시 월 또는 래지 월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은 제 7조의 월 기본 요금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금액을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으로 하며, 기본 매수의 산정도 월 기본 매수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매수를 기본 매수로 한다.

제 9조 (Re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① 보증금은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기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은 "을"이 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산출 후 해당 월의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이 Rental Service 이용 대금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제16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금의 관리 및 처분) ① "을"은 전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동조 ①항 절단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은 그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시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은 보증금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을"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복사기 가액.

2. 전 제 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월 사용 요금 중 계약종료일 현재 "갑"이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금액.

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중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금액.

⑤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을"이 보관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선관외부) ① 전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을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을"에게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이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소모품, 소모성부품을 "을"으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기술역외에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갑" 및 "을"은 상호, 연락처 등의 변경 및 본 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시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을"이 기존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용도(목적)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업무용에서 복사영업용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최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동설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이를 실시한다.

④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변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변경의 효력은 별도의 경합이 없는 한 그 변경에 관한 합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비용의 청구) ①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소모품 및 부품 등의 비용과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변경을 요청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 중 본 계약 각 조항에서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을"이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6조의 Rental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당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당좌 거래 정지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화의/파산/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체납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5조 (기계 등의 반환)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은 복사기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사기 등의 회수를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 시간 내에 기계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갑"의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항에 관한 배상문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가(소비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 년 01월 0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12개월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써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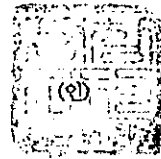
②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①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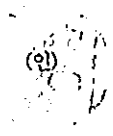
2018 년 01월 일

위 "갑" (사업장소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154
 (상 호) 스카이스스템
 (사업자등록번호) 225-02-63277
 (성 명) 이진욱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154
 평창군청
 225-83-00903
 김재국



위 "을" (사업장소재) 강원도 평창군읍 하리 154
 (상 호) 스카이스스템
 (사업자등록번호) 225-02-63277
 (성 명) 이진욱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후) OA랜드 대리점(이하 "술"이라 한다)와 평창군청 자치행정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갑	술
사업자등록번호	225-43-009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근정로	강원 평창 평창 학교길68
상호	평창군청 자치행정	OA랜드
대표자	신재우	이명숙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술"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술"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여,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술"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SERIAL NO. SORTER <u>AP10000</u>	개시일 <u>2015. 01. 02</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근정로</u> 사업장명 부과명 <u>자치행정</u>
XEROX SERIAL NO. SORTER	개시일 개시메타	소재지 사업장명 부과명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_____

임차료: 기본요금: ₩115,000 원/월/콜렉 5,000 매/칼라 5,000 원/칼라

추가요금: 콜렉 (500 매부터) 200 원/칼라 (500 매부터) 200 원/칼라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를 매월 "술"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술"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료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비율로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은행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명의 외환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데크를 통한 매입환율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데크를 통한 매입환율 적용한다.
- (4) 동등 지불은 "술"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술"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술"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계약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술"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술"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 일 "술"에게 송부해 주거나 "술"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술"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받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여 최종 받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술"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청재무과 (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시스템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대수량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Canon c5535i		원고이송장치	평창군 재무과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돌으로써 인도(납품)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일체의 부합물과 경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매대, 대여,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열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제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되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토너 카트리지는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현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침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정기 교환부품.
3. 기술 용역.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시 Cleaning,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가액,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매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매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NO	기종	인대료(원)	보증금(원)	Rental Service 요금 기준(VAT 별도 면제)					카운터
				기종	용량	기대매수	기대요금	추가요금	
1	Canon c5535i	393,000		컬라	150	1,000			0
				흑백	22	3,000			0
2				컬라					
				흑백					
3				컬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일로부터 매 ()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10)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직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를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써 해당월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월의 Rental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본 요금제에 의하여 Rental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개시 월 또는 해지 월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은 제 7조의 월 기본 요금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금액을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으로 하며, 기본 매수의 상경도 월 기본 매수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매수를 기본 매수로 한다.

제 9조 (Re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① 보증금은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기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은 "을"이 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산출 후 해당 월의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이 Rental Service 이용 대금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제16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금의 관리 및 처분) ① "을"은 전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동조 ①항 절단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은 그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시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은 보증금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을"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복사기 가액.

2. 전 제 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월 사용 요금 중 계약종료일 현재 "갑"이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금액.

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중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금액.

⑤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을"이 보관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선관의무) ① 전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을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을"에게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이 화재, 도난, 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소모품, 소모성부품을 "을"으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외에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갑" 및 "을"은 상호, 연락처 등의 변경 및 본 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시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을"이 기존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용도(목적)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업무용에서 복사영업용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최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동설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이를 실시한다.

④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변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변경의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변경에 관한 합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비용의 청구) ①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소모품 및 부품 등의 비용과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변경을 요청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 중 본 계약 각 조항에서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을"이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6조의 Rental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당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종업원에 대한 담금을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당좌 거래 정지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회외/파산/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가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5조 (기계 등의 반환)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은 복사기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사기 등의 회수를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 시간 내에 기계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갑"의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항에 관한 배상문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가(소비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년 9 월 16 일로부터 2019 년 9 월 15 일까지(36개월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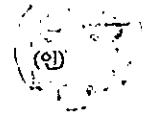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써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②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①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16년 9월 일

위 “갑” (사 업 장 소 계) 가평 평창군 평창읍 111
 (상 호) 평창원차 개부과-
 (사업자등록번호) 225-03-00903
 (성 명) 이석희



위 “을” (사 업 장 소 계) 225-02-00000
 (상 호) 스카이O/A 라
 (사업자등록번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111
 (성 명) 드대 스터업 가평점 사무국장

(인)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청(경제체육과) (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스템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세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번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IR ADV C5550i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인근차량계과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들으므로 인도(납품)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일체의 부합물과 정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배매, 대어,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물로 제공하거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열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제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만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토너 카트리지는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현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침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정기 교환부품.
3. 기술 용역.
 -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시 Cleaning,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가액,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매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매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계약기종				요금 제도(A4 용지 요금 기준/VAT 포함, 단위: 원)					최초 카운터
NO	기종	임대료(원)	보증금	구분	장당 요금	용량매수			
						기본매수	기본요금	추가요금	
1	IR ADV C5550i	536,800(vat포함)		칼라	120	1,000			0
				흑백	22	3,000			0
2				칼라					
				흑백					
3				칼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일로부터 매 ()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직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불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서 해당월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월의 Rental 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본 요금제에 의하여 Rental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개시 될 또는 해지 원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은 제 7조의 월 기본 요금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원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금액을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으로 하며, 기본 매수의 산정도 월 기본 매수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원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매수를 기본 매수로 한다.

제 9조 (Re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① 보증금은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기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은 "을"이 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산출 후 해당 원의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이 Rental Service 이용 대금의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제16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금의 관리 및 처분) ① "을"은 전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동조 ①항 전단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은 그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시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은 보증금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을"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복사기 가액.

2. 전 제 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월 사용 요금 중 계약종료일 현재 "갑"이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금액.

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중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금액.

⑤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을"이 보관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선관리의무) ① 전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을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을"에게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이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이 개공하거나 유통하는 소모품, 소모성부품을 "을"으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외에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갑" 및 "을"은 상호, 연락처 등의 변경 및 본 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시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을"이 기존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용도(목적)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업무용에서 복사영업용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최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동설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이를 실시한다.

④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변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변경의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변경에 관한 합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비용의 청구) ①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소모품 및 부품 등의 비용과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변경을 요청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 중 본 계약 각 조항에서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을"이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6조의 Rental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인체하는 등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당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중원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비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당사 거래 정지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화의/파산/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채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5조 (기계 등의 반환)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은 복사기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사기 등의 회수를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 시간 내에 기계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갑"의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항에 관한 배상문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기(소:미자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년 3월 1일로부터 2021 년 3월 1일까지(48개월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서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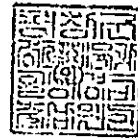
②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①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위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17 년 3월 일

2017.03.01

위 "갑" (사 업 장 소 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 77
 (상 호) 평창상생 경제세움터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성 명) 경제세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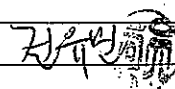

위 "을" (사 업 장 소 계) 강원도 평창군읍 하리 151
 (상 호) 스카이스터
 (사업자등록번호) 225-02-68277
 (성 명) 이진욱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0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환경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3월 30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근정길 77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
상호	평창군청	0 A 랜드
대표자	심재성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PC11CPLAC</u> SERIAL NO. <u>187422</u> SORTER	개시일 <u>2017.04.01</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근정길 77</u> 사업장명 부과명 <u>환경사</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하기를 하지 않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임차료: 기본요금:	<u>200,000원</u>	1월 <u>보통</u> 7월 <u>보통</u> 12월 <u>보통</u> 1,500매
추가요금:	<u>보통</u>	1월 <u>보통</u> 1,501매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W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현찰 매입률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남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렌트 대리점(이하 "임"이라 한다)와 영광건설(주)(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6년 11월 18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225-02-76568
주 소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
상 호	영광건설(주)	O A 렌트
대 표 자	김재국 (김영호)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입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4910c2221</u>	개시일 <u>2016.11.1</u>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u>
SERIAL NO. <u>9911127</u>	개시메타	사업장명 <u>영광건설</u>
SORTER		부과명 <u>신영하</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를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10,000,000원</u>	
임차료: 기본요금: <u>2,280,000원</u>	월(당월 6,000원/월) 추가
추가요금: <u>20원</u>	월(당월 600원) 매번 추가
* 기본 요금은 장비 임대료 W	
S/W 요금: <u> </u>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를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먼저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먼저 할증료는 먼저 1일당 연체되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이율로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은행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의한은행 고시 대 고객 환율 매입환율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환율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용제 등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시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면량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 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청(주민생활지원실) (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ystem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번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3050ci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맞추어서 인도(납품)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인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일체의 부합물과 기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배매, 대여,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멸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제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터너 카트리지는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현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러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정기 교환부품.
3. 기술 용역.

-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시 Cleaning,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가액,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매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매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계약기종				요금 제도(A4 용지 요금 기준/VAT 포함, 단위: 원/매)					최초 카운터
NO	기종	임대료(월)	보증금	구분	장당 요금	종합매수			
						기본매	기본요금	추가요금	
1	3050ci	390,000		칼라	120	2,000			0
				흑백	22	6,000			0
2				칼라					
				흑백					
3				칼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1)일로부터 매 (30)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15)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일 또는 직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를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써 해당월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월의 Rental 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본 요금제에 의하여 Rental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개시 월 또는 해지 월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은 제 7조의 월 기본 요금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원의 중 영업 일수로 나눈 금액을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으로 하며, 기본 매수의 산정도 월 기본 매수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원의 중 영업 일수로 나눈 매수를 기본 매수로 한다.

제 9조 (Re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① 보증금은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기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은 "을"이 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산출 후 해당 원의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이 Rental Service 이용 대금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제16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금의 관리 및 처분) ① "을"은 전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동조 (1)항 전단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에게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은 그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시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이자폭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은 보증금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을"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복사기 가액.

2. 전 제 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원 사용 요금 중 계약종료일 현재 "갑"이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금액.

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중 지급의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금액.

⑤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을"이 보관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선관리의무) ① 전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을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을"에게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이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이 개공하거나 유통하는 소모품, 소모성부품을 "을"으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외에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갑" 및 "을"은 상호, 연락처 등의 변경 및 본 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시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을"이 기존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용도(목적)를 변경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업무용에서 복사업무용으로 전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최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동설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이를 실시한다.

④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변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변경의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변경에 관한 합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비용의 청구) (1) 전 제 5조 (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소모품 및 부품 등의 비용과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변경을 요청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 중 본 계약 각 조항에서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을"이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15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6조의 Rental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당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당좌 거래 징지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화의/파산/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5조 (기계 등의 반환)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은 복사기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사기 등의 회수를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 시간 내에 기계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갑"의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㉓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황에 관한 배상분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가(소비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기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원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㉔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㉕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윤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년 4월 18일부터 2019 년 4월 18일까지(36개월간)으로 한다.

㉖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㉗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써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㉘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①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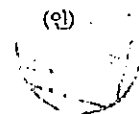
2016 년 4월 일

제19조(계약기간 만료A)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 "을"은 공문으로 위 A시를 "갑"에게 알려 계약의 전액상을 주는 것으로 한다.

위 "갑" (사 업 장 소 계) 강원도 평강군 을곡청길 77 평강군청 인준순과
(상 호) 평강군청(인준순과)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성 명) 심재국



위 "을" (사 업 장 소 계) 강원도 평강군 읍 하리 154
(상 호) 스카이스스템
(사업자등록번호) 225-02-68277
(성 명) 이진욱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복스(주) 0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평창군 평창읍 도시외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6년 9월 7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93-009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근청리 11	평창군 평창읍 학교길 68
상호	평창군청 도시외	0 A 랜드
대표자	김재우 도시외	함승추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SP1033AT</u> SERIAL NO. <u>194164</u> SORTER	개시일 <u>2016.09.07</u> 개시메타 <u>0</u>	소재지 사업장명 부과명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1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11</u>
임차료: 기본요금:
추가요금:	<u>1개월당 20원</u>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w (부가가치세 별도)에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현찰 매입율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7 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0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오시와 고등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3월 2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근정길 11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68
상호	평창군청	0 A 랜드
대표자	심재규 (대) 박보영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DocuCentre</u> SERIAL NO. <u>425780</u> SORTER	개시일 <u>2017.3.2</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근정길 11</u> 사업장명 부과명 <u>오시와 고등학교 인화실</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4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 A</u>	
임차료: 기본요금: <u>100,000원</u> /월 (<u>—</u> 매/월)	
추가요금: <u>12동주임차료 조건</u> /월 (<u>—</u> 매/부터)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W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비율을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현찰 매입률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랜드 대리점(이하 "술"이라 한다)와 신재국 (대)김다영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갑	술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03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69-21	평창군 평창읍 황교길68
상호	평창군청 시설관리과	O A 랜드
대표자	신재국 (대)김다영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술"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술"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입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SPIC 3325</u> SERIAL NO. <u>190666</u> SORTER	개시일 <u>2010. 1. 1</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중부리</u> 사업장명 부과명 <u>신재국 (대)김다영</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3 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 10,000,000</u> 임차료: 기본요금: <u>380,000원</u> 추가요금: <u>복합기 20원/지정, 1월(6000매/월) 한라 1500원</u> * 기본 요금은 장비 임차료 유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1월(6000매/월) 한라 1500원 1월(6000매/월) 한라 1500원
--	--

제 5 조 (임차료의 지급)

- (1) 임차료는 매월 "술"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술"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급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급일자용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급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현상 매입율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급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급은 "술"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술"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술"의 보수정액 중 사용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를 요금 계산시 이율 공제한다.
- (3) "갑"은 "술"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용의 "메타 연대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3일 "술"에게 송부해 주거나 "술"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술"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받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받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술"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갑"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술"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득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시스템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번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캐논 C5535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들도록 인도(납품)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일체의 부합물과 정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매매, 대여,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열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
 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제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반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토너 카
 트리지스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현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침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정기 교환부품.
3. 기술 영역.

-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시 Cleaning,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가액,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매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매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계 약 기 종				요금 제도(A4 용지 요금 기준)(VAT 포함, 단위 : 원, 매)					최초 카운터
NO	기종	임대료(월)	보증금	구분	장당 요금	통합매수			
						기본매수	기본요금	추가요금	
1	캐논 C5535	393,000(부가세포함)		칼라	120	2,000			0
				흑백	22	6,000			0
2				칼라					
				흑백					
3				칼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01)일로부터 매 (말)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말)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직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를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써 해당월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월의 Rental요금을 계산한다.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항에 관한 배상문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가(소비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 년 01월 0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12개월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써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②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①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틀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18 년 01월 일

위 "갑" (사 업 장 소 재)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TEL(033)332-4000 FAX:330-4800
 우편번호 25377

위 "을" (사 업 장 소 재) 강원도 평창군읍 하리 154
 (상 호) 스카이스ystem
 (사업자등록번호) 225-02-68277
 (성 명) 이진욱



Rental Service 계약서

평창군보건의료원(건로지원과)(이하 "갑"이라 함)와 스카이스스템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Rental Service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Rental Service 의 정의) Rental Service 란 "을"이 복사기를 "갑"에게 임대하고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한 Rental Service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조 (Rental Service 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해 Rental Service 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과 같다.

<표1- Rental Service 의 대상>

기종	기번	장착 OPTION	설치 장소	TEL
C5535			평창군보건의료원 원부계	

제 3조 (기계의 인도) ① "을"은 복사기를 전조 규정의 설치장소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놓으로써 인도(납품)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은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본 계약 내용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 시 해지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전조의 설치 장소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4조 (소유권)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인도한 복사기 및 장착 OPTION 등 일체의 부합물과 장기 소모성부품, 소모품 등 (이하 '복사기 등'이라 함)은 "을"의 자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한다.

② "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항의 복사기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배대, 대여, 담보 또는 압류의 목적물로 제공하거나 등의 임의 처분행위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 등,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오손/손괴/멸실 기타 복사기 등의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승낙 없이 전 조1항의 복사기 등을 본래의 설치 장소에서 이동시키거나 만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 (Rental Service 의 제공) ① "을"이 "갑"에게 Rental Service 요금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토너 카트리지는 제외한다.

1. 소모품 : Toner, 현상제 등 소모품 (용지, 스테이플침 제외).
2. 소모성 부품 : Drum, Roller 등 장기 교환부품.
3. 기술 용역.

- 가. 최초 복사기 설치 시 기계교육 및 사용 방법 교육.
- 나. 정기적 방문 점검 시 Cleaning, 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 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요청 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② 전항의 서비스는 "을"의 영업 시간 내에 한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 (담보의 제공) "을"은 "을"의 복사기의 기계, "갑"의 Rental Service 요금 등 "갑"이 "을"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하거나 "갑"의 과실로 "을"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Rental Service 요금)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Rental Service 요금은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와 같다.

단, Large Size 즉, B4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배수는 요금 계산시 A4 용지 사용 배수의 2/1로 산정한다.

<표2- Rental Service 요금표>

계 약 기 종				요금 제도(A4 용지 요금 기준)(VAT 포함, 단위 : 원 매)					최초 카운터
NO	기종	임대료(월)	보증금	구분	장당 요금	통합매수			
						기본매수	기본요금	추가요금	
1	C5535	393,000		칼라	120	2,000			0
				흑백	22	6,000			0
2				칼라					
				흑백					
3				칼라					
				흑백					

제 8조 (Re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① 월 Rental Service 요금의 산정 기간은 매 ()일로부터 매 ()일까지의 1개월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매월 ()일(해당일이 법정 공휴일이거나 "갑" 또는 "을"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이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을" 소정의 '복사기 사용매수 확인서'에 기준일 현재 복사매수(복합기의 경우 FAX, Printer의 사용매수를 포함한 전체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누적 counter 매수를 기록하고, 이 매수에서 전월 기준일 당시 누적 counter 매수를 차감한 매수로써 해당일의 복사매수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해당일의 Rental 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본 요금제에 의하여 Rental Service 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개시 월 또는 해지 월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은 제 7조의 월 기본 요금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금액을 Rental Service 기본 요금으로 하며, 기본 매수의 산정도 월 기본 매수에 실 사용 일수(영업 일수)를 곱한 후 해당 월의 총 영업 일수로 나눈 매수를 기본 매수로 한다.
제 9조 (Re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① 보증금은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복사기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기본 요금 및 추가 요금은 "을"이 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산출 후 해당 원의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이 Rental Service 이용 대금의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제16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금의 관리 및 처분) ① "을"은 전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동조 (1)항 전단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이를 보관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종료 시까지 "을"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증금은 그 예치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시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의 종료 시 "을"은 보증금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을"이 손해로 입은 경우 해당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을"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복사기 가액.

2. 전 제 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월 사용 요금 중 계약종료일 현재 "갑"이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금액.

3.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중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금액.

⑤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이 "을"이 보관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신뢰의무) ① 전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은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을"에게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이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거나 유통하는 소모품, 소모성부품을 "을"으로부터 인도받은 복사기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외에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① "갑" 및 "을"은 상호, 연락처 등의 변경 및 본 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시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을"이 기존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한 통지는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용도(목적)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일반업무용에서 복사영업용으로의 전환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을"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 제 2조에 규정한 복사기 등의 최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서 "을"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동설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이를 실시한다.

④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변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변경의 효력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변경에 관한 합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비용의 청구) ① 전 제 5조 ①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정수리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소모품 및 부품 등의 비용과 별도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변경을 요청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갑"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 중 본 계약 각 조항에서 "을"의 부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을"이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15일 선의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6조의 Rental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지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당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정도로 신용상대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4.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비용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전 제 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당사 거래 정지된 경우.

3. "갑" 또는 "을"이 화의/파산/법정관리신청을 당하거나 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채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5조 (기계 등의 반환)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은 복사기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사기 등의 회수를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 시간 내에 기계의 설치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갑"의

영업시간 외에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㉔ "을"이 복사기 등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갑"의 계약내용 위반사항에 관한 배상분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갑"이 전 제 4조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복사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복사기 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복사기 등의 시판가(소비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 중 파손 등의 행위가 있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에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최근 2개월 월평균 Rental Service 요금의 50% 해당 금액을 계약 잔여 기간 월수에 곱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기타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내용에 의한 채무 또는 본 조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8%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8 년 01월 01일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36개월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의 익일부로 동일한 조건의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기 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위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이를 "갑"과 "을"간의 협의로써 정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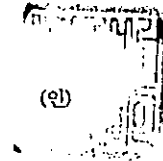
② "갑"과 "을"간의 분쟁이 본 조 제1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대한상사 중재위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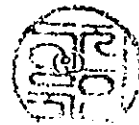
2018 년 01월 01일

위 "갑" (사 업 장 소 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평창군. 읍 중부로 61
평창군 보건서로된 진로지원과
225-83-00956



위 "을" (사 업 장 소 제) 강원도 평창군.읍 하리 154
(상 호) 스카이스텝
(사업자등록번호) 225-02-68277
(성 명) 이진욱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A랜드 대리점(이하 "유"이라 한다)와 농축산인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1년 10월 20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02-76568
주소	경기도 평창군 평창읍 어안2리 68-1 평창 평창 학교길 68	
상호	평창군농업기술센터 A랜드	
대표자	2층 농축산인 이명수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인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 장소
XEROX SERIAL NO. SORTER	개시일 <u>2011. 10. 20</u> 개시메타 <u>0.2621</u> <u># 1912103</u>	소재지 <u>경기도 평창군 평창읍 어안2리</u> 사업장명 <u>평창군농업기술센터</u> 부과명 <u>농축산인</u>
XEROX SERIAL NO. SORTER	개시일 개시메타	소재지 사업장명 부과명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7,000,000 원
임차료: 기본요금	7,000,000 원 (월) (불含税) (매/월)
추가요금	7,000,000 원 (월) (불含税) (매/월)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합동회차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합동회차는 연체 1일당 연체 회고 있는 임차료에 연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회국원에 의한 요금지불이 있어, 외관금에 관한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체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리 연할 매입회차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리 전신환 예입자를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영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대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계약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3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영보해 주기도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대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대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대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국후지제록스(주) O A 랜드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와 기술지원과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6월 1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83-00941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여안리 46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68
상호	농업기술센터	O A 랜드
대표자	김봉기 (대표) 김성명 (부대표)	함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차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APIV 4425</u> SERIAL NO. <u>1172425</u> SORTER	개시일 <u>2017. 6. 1</u> 개시메타 <u>039527</u> <u>기종</u> <u>4165214</u>	소재지 <u>평창군 농업기술센터</u> 사업장명 <u>기술지원과</u> 부과명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u>	
임차료: 기본요금: <u>₩ 442,000</u> +	1월 <u>금액 6000</u> 매/월 <u>2017. 6. 1</u> 개
추가요금: <u>불액 장외 22원</u> <u>김성명</u>	1월 <u>금액 6000</u> 매/부터 <u>2017. 6. 1</u> 개
* 기본 요금은 장외 임차료 <u>김성명</u>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u>김성명</u>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불)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연체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할증요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외환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율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현찰 매입율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을"이 별도 통보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5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초 월은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은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복사기임대차계약서

한옥후지제독스(주) O A 랜드 대리점(이하 "출"이라 한다)와 평창군 평창읍 평창1로 4 (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EROX 복사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년 10월 2일

구분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225-02-76568	225-02-76568
주소	평창군 평창읍 평창1로 4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68
상호	O A 랜드	O A 랜드
대표자	한승	한승
주민등록번호		

— 記 —

제 1 조 (임대차 계약의 정의)

복사기 임대차 계약이란 "갑"이 "을"로부터 임대한 XEROX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을"은 복사기의 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제공 및 보수 등을 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복사기)

기종 및 기계번호	요금계산 개시일 및 개시메타	설치장소
XEROX <u>APVC4444</u> SERIAL NO. <u>P10092</u> SORTER	개시일 <u>2018. 10. 2</u> 개시메타	소재지 <u>평창군 평창읍 평창1로 4</u> 사업장명 부과명 <u>평창군 평창읍 평창1로 4</u>

제 3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요금계산 개시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는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임차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u>1,000,000</u>	
임차료: 기본요금: <u>1,000,000</u> /월 (1,000 메/월) <u>1,100,000</u>	
추가요금: <u>0</u> /월 (메/월)	
※ 기본 요금은 장비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별도)가 포함된 금액임	
S/W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제 5 조 (임차료의 지급)

- (1) 임차료는 매월 "을"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갑"이 임차료 지불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 법정의 최고 없이 연체 합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체 합충료율은 연체 1일당 연체 되고 있는 임차료에 년 18.5%의 이율을 적용한다.
- (3) 외국환에 의한 요금지불에 있어, 외환금액 환산은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에 의한 지불은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 고객 협할 매입율을 적용하며, 수표에 의한 지불은 대고객 전산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 (4) 모든 지불은 "갑"이 법포 송부하지 않는 한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을"의 계좌로 납부한다.

제 6 조 (임차료의 계산)

- (1) 임차료 계산은 복사매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을"의 보수점검 중 사용한 테스트복사 및 본 제품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량복사는 요금 계산시 이를 공제한다.
- (3)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복사기 메타를 확인하여 "을"의 "메타 연락표" 양식에 기재하여 매월 _____일 "을"에게 송부해 주거나 "을"에게 구두 통보해 주기로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복사기 메타(복사매수)에 의하여 요금을 청구한다.
- (4) 복사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기본매수에 미달할 경우엔 최소 월간 복사매수에 따라 계산하며 최종 월간 기본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 7 조 (보증금)

- (1) "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증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